

# 이 장 회 의 자 료

# • 목 차 •

---

## [총무부서]

1. 하동읍 투표구 조정 및 정비 안내 ..... 1
2. 찾아가는 에듀버스(이동형 배움터) 9월 교육 신청 안내 ..... 2

## [맞춤형복지부서]

1. 2024년 다목적회관(경로당) 신개축사업 수요조사 실시 ..... 3
2. 2023년 미성년 미혼 한부모(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안내 ..... 3

## [산업경제부서]

1. 2023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수요조사 협조 ..... 4
2. 2023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협조 ..... 4
3.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5

## [재무부서]

1.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안내 ..... 6

## [민원부서]

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7
2.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 8

# 총무부서

## 1. 하동읍 투표구 조정 및 정비 안내

(황형래 880-6003)

- 정비배경: 농촌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선거인수 상한 조정
  - ※ 선거인수: 당초 5,000명(2008년도 기준) → 변경 7,000명
- 정비개요
  - 정비배경: 농촌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선거환경 변화, 선거인 편의성 고려
  - 정비내용: [기존] 하동읍 제1,2,3,4투 → [변경] 하동읍 제1,2투 통합
    - ▶ ① 제1투(홍룡리, 읍내리[동·서해량, 서·동교, 서·중동, 동광], 두곡리[두곡])와 제4투(화심리, 읍내리[중앙1·2, 부용, 연화, 연산], 두곡리[서재, 고서]) 통합
    - ▶ ② 제2투(광평리, 비파리[화산])와 제3투(신기리, 목도리, 비파리[비파, 신촌]) 통합
- 정비(안) 상세내용

투표구명	관할구역	투표소	20대 대선('22년) 선거인수 (투표자수)	8회 지선('22년) 선거인수 (투표자수)	조정방향	
					내용	예정 투표소
하동읍 제1투	홍룡리 일원, 읍내리(동해량, 서해량, 서교, 동교, 서동, 중동, 동광), 두곡리(두곡)	하동읍사무소 (1층, 로비)	2,456 (1,879)	2,381 (1,716)	하동읍 제1투와 제4투 통합	하동읍사무소 (1층, 로비)
하동읍 제4투	화심리 일원, 읍내리(중앙1, 중앙2, 부용, 연화, 연산), 두곡리(서재, 고서)	하동초등학교 (1층, 갈마관)	2,613 (2,074)	2,612 (1,898)		
하동읍 제2투	광평리 일원, 비파리(화산)	하동고등학교 (1층, 체육관)	2,395 (1,918)	2,386 (1,778)	하동읍 제2투와 제3투 통합	하동고등학교 (1층, 체육관)
하동읍 제3투	신기리·목도리 일원, 비파리(비파, 신촌)	하동교육지원청 (1층, 로비)	1,100 (877)	1,086 (817)		

- 협조사항: 투표구 정비(안)에 대한 주민 홍보 협조

## 2. 찾아가는 에듀버스(이동형 배움터) 9월 교육 신청 안내

(박후란 880-6005)

- 추진배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신청기한: 2023. 8. 28.(월)까지
- 신청대상: 마을단위, 단체, 소모임 등 주민 누구나
- 교육과목: **【붙임 1】** 참고 ※ 교육 1회당 2~3시간 소요
- 교육신청 서식

읍/면	희망 교육명	교육신청 대표자	인원	교육 희망장소
예시)	교육목록 중 택	※ 교육신청 내용 연락 가능한 분 연락처 기재	※최소 5명이상	00마을회관
하동읍	스마트폰 이해와 활용	성명 : 홍길동 연락처 : 010-0000-0000	5 명	00마을회관

# 맞춤형복지 부서

## 1. 2024년 다목적회관(경로당) 개보수사업 수요조사

(황 선 880-6042)

- 신청기한: [2023. 8. 30.\(수\)일한](#)
- 신청대상: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등록경로당
- 지원기준
  - 붕괴, 균열, 누수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대상지 우선 지원
  - 원칙적으로 시설임대 불가, 임대 유지시 개보수비는 임대료로 충당
  - 기존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로당은 3년간 재지원 불가
  - ※ 안전상의 이유는 재지원 가능함
- 신청서류: 견적서

## 2. 2023년 미성년 미혼 한부모(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안내

(류승철 880-6048)

- 신청기간: 2023. 8. 17.(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 홈페이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http://www.forlife.or.kr)
- 문 의 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 산업경제 부서

## 1. 2023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수요조사 협조

(김수진 880-6014)

- 조사기한: 2023. 8. 30.(수) 한
- 조사내용: 신청 사실 미인지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
- 조사서식

마을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유의사항: 수요조사이며 추가 신청 확정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주민에 안내 철저

## 2. 2023년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협조

(유수연 880-6013)

- 완료기한: 2023. 9. 15.(금) 한
- 추진대상: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마을)
- 활동방법: 직불 관할지(농지소재지)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활동, 명절전 마을 대청소, 마을 환경미화 활동(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등), 마을 공동공간 청소 등
- 유의사항
  - 공동체 활동 미참여 시 직불금 5% 감액  
(단, 마을별 직불 대상자 50% 이상 참여 시 전원 인정, 50% 미만 개별 인정)
  - 공동체 활동 참여 후 반드시 참여자 명부에 서명

### 3.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유수연 880-6013)

- 신청기한: 2023. 8. 31.(목) 한
- 사업대상: 조사료 생산 단체 및 개별 농가
- 지원단가: 150,000원/ha(보조 60% 자담 40%)
- 유의사항
  - 조사료 종자는 농민이 구입하고, 드론 파종 대행료만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 시 농가(단체)가 드론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주소지 읍면에 사업 신청(농지 소재지 X)
- 신청서식

성 명	사업지 지번	총면적(m <sup>2</sup> )	파종면적(m <sup>2</sup> )	파종종자

# 재무부서

## 1.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안내

(정소미 880-6031)

- 과세기준일: 2023. 7. 1.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외국인 등 제외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입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세 율
  - 개인분: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사업소분: 55,000원 ~ 220,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 과세
- 부과건수

합 계		개 인 분		사업소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95	101,319천원	4,289	46,418천원	706	54,901천원

- 납부기한: [2023. 8. 16. ~ 2023. 8. 31.](#)
- 납부방법: 지로 및 인터넷뱅킹 납부, 읍사무소 방문 [현금, 카드(전화) 가능]
- 협조사항
  - 납기한 내 납부를 위한 마을 홍보 방송 시행: **【붙임 2】 참고**
  - 자동이체 신청자: 납기일 도래 전 거래계좌 잔액 확인 요청
  - 고지서 미수령 시 재정관리과(☎880-2297)나 읍사무소 재무부서(☎880-6031)로 문의



## 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황소라 880-6023)

### ○ 개요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 조사자: 각 마을 이장 및 담당 공무원
- 조사내용
  - 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②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③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출생미등록 아동 중점 조사)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조사

-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 조사 대상 및 방식: 【붙임 3~6】 참고

- 1단계: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 ~ 8. 20.)
- 2단계: 방문조사(8. 21. ~ 10. 10.)
  - ① 이장 방문조사(8. 21. ~ 9. 17.)  
: 9. 17.까지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일체 담당마을 공무원에게 반납
  - ② 담당마을 공무원 개별조사(9. 18. ~ 10. 10.)  
: 이장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에 대하여 담당마을 공무원 개별조사 후 사실조사서 작성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적용기간: 2023. 7. 17. ~ 11. 10.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과태료 1/2 경감
- 협조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주민등록 사실조사 명부에 의거 거주사실 확인(명부 별도 배부)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
    - ① 이장: [2023. 9. 17.\(일\)까지](#)
    - ② 담당공무원: [2023. 10. 10.\(화\)까지](#)

## 2.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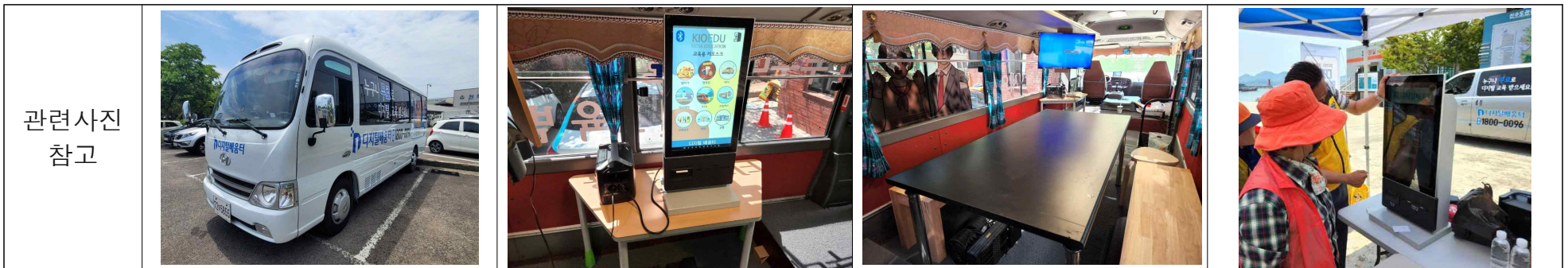
(이준섭 880-6024)

- 개요: 민원업무 담당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처우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함.
- 실시일자: 군청 민원실은 당번제 현행 유지(9월부터 실시)
- 대상: 군청 및 읍·면 민원실
-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
  - 점심시간 착오 방문자를 배려하기 위해 민원인 대기공간 제공
  - 화요일 저녁에 오세요! 「야간 민원실」 사전예약제 실시
  -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등

## 【붙임 1】 하동군 찾아가는 에듀버스(이동형 배움터) 교육목록

	교 육 명	교 육 설 명
1	스마트폰 이해와 활용	스마트폰 기본 설정하기, 전화하기 및 연락처 관리하기 이메일 계정 및 앱 설치하기, 유용한 앱 활용하기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한 금융거래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융 거래 방법 학습하기 보이스피싱 같은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대처법 학습하기
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편리한 교통생활	지도·대중교통앱(버스, 기차, 코레일) 활용하여 교통정보 확인하기 스마트하게 여행 정보 찾기
4	스마트한 인터넷 검색	정보 바르게 검색하기, 연산자를 활용한 고급 정보 검색하기. 스마트폰 콘텐츠 관리하기
5	온라인 쇼핑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주문·배달앱으로 물건 주문·결제하기 키오스크(무인결제기)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주문하기
6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하기	정부24·폐기물 처리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 민원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법 학습하기
7	SNS 제대로 배우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8	나도 이제 사진작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앱을 이용하여 전문가처럼 사진 편집하기
9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일상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키오스크(무인결제기)의 사용법 학습하기

※ 목록 외 희망 과목이 있을 시 문의 바랍니다.



## 홍보방송안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안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사무소에서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하동읍사무소 재무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반 복 >

감사합니다.

**붙임3 이·통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고자료**

(앞쪽)

**1 유선/방문 조사 대상 구분 방법**

일반 세대	1단계		⇒	2단계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참여 불참		방문조사 불요	방문조사
중점조사 대상 세대	x		⇒		

○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포함 방문 조사

- [중점 조사 대상 세대란?]
- ①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 ②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에 미참여 방문 조사

○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미포함되며(일반 세대),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 방문 조사 불요

**2 방문 조사 진행**

- (기 간) '23. 8. 21. ~ 9. 17.
- (유의사항) '3 조사 방식' 참고 및 이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

- 사실조사 시 이·통장증이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또는 제시 * 조사 종료 후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반납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유출·분실 시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고, 문서 회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복지취약계층 명단, 사망의심자 명단, 장기결석·미취학아동 명단 등
[긴급 상황 대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담당 공무원 연락 후 탄력적으로 현장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 방문 주소지에 감염의심자 혹은 확진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거주지 외부에서 폐문 상태로 통화를 통해 조사 시행 -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방문 자제, 확진되었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담당 공무원은 대체인력 투입 검토)

### 3] 조사 방식

-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 방식에 주의**
  - 기존 세대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명부를 확인**

#### [질문 예시]

- (세대명부를 보고) **여기 살고 계신 분이 A, B, C가 맞나요?**  
 ☞ **잘못된 예** (세대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방식임)
- (조사 대상자에게 먼저)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누구누구인가요?**  
 → (A, B라고 답할 경우) 세대명부 상에는 C도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혹시 잠시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옳은 예** (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세대명부와 비교하는 방식임)

- 출생미등록 아동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있다면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수인계**
  - 특히, 아동용품이 다수 보임에도 아동인 세대원이 없다면 유의
    - ※ ‘제주 세자매 사건(세 자매가 출생 미신고된 채 20년 넘게 지내다가 발견)’이나 ‘수원 세모녀 사건(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세모녀가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 등 주민등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바, 조사 시 유사 사례에 특히 유의
-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 시 다음 사항에 유의**
  -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이른 아침,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 **부재 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오후, 저녁 등) 재방문**
  - 장기 미인정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거주 세대 : 유학, 질병과 같이 취학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제도\*** 안내
    -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취학 예정 혹은 취학 중인 학교에 문의토록 안내

### 4] 조사 이후 조치

- **'23. 9. 17.까지**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담당자에게 제출 및 반납

**1 분실 사실 보고**

- 이·통장은 사망의심자 명단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시·군·구 →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보고

**2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동행하여 분실 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3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사망의심자 명단 등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4 개인정보 유출<sup>1)</sup>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법 제34조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여기서 '지체 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 활용

**5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1)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전화번호			
조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조사 개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 내용	현장방문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인술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기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참고인진술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실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대조·확인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을 대조·확인한 결과를 정확히 적으며,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남/여)	실제 거주 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 ]거주 [ ]불거주	[ ]등재 [ ]미등재	
			[ ]거주 [ ]불거주	[ ]등재 [ ]미등재		
			[ ]거주 [ ]불거주	[ ]등재 [ ]미등재		
			[ ]거주 [ ]불거주	[ ]등재 [ ]미등재		
			[ ]거주 [ ]불거주	[ ]등재 [ ]미등재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고,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종합의견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					
확인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b>읍·면·동장 귀하</b>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